

운영규정 개요

I. 시설 기본정보

요양기관	수재가복지센터	대 표	김 현 주
설치일자	2024.02.27	전화번호	070-4323-3100
급여종류	(재가급여) 방문요양	팩스번호	070-4855-3100
주 소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35		
이용대상	관내지역의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)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 받은 1-5등급자 등으로 한다.		

II. 이용 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

이용정원	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을 두지 않는다.
이용자 모집방법	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기관홈페이지, 대상자 방문상담, 유선상담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계약기간	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를 보호를 위한 계약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해지	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애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.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. 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신원인수인 권리	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배상책임보험	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.

IV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.
---------	---------------

